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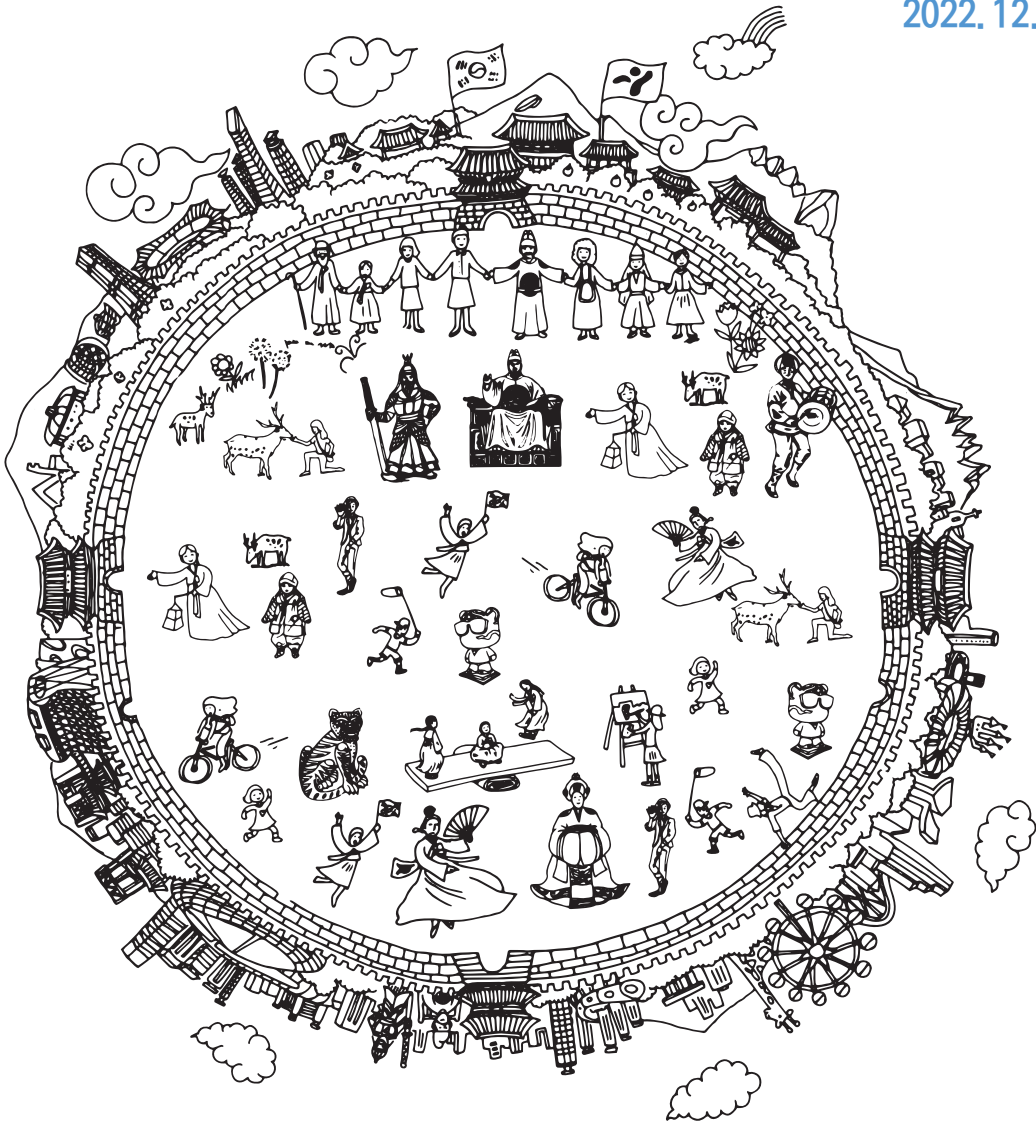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38호
2022. 12. 23.(금)



목 차**◆ 자치법규****[입법예고]**

제2022 - 346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2 - 346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22 - 346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 공 고

제2022 - 3443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6
---------------	-------------------	---------

자치법규**[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6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부서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사무조정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담당관 신설(안 제6조), 시민권익담당관 폐지(현행 제7조)

나. 부서별 명칭 변경

다.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부서별 사무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02-2133-6633, FAX : 02-2133-08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 이메일 : iamcream@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6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인사운영상 변경사항 반영 및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부서간 업무 이관, 사무분장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4급상당) 신설(안 제3조제2항)

- (1명) 문화수석

나.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부서간 업무이관, 사무분장 변경 등

- 서울시립미술관 내 체계적인 고객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고객홍보과’ 신설 및 전시·교육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시교육과’ 재편·신설(안 제108조제3항, 제4항)
- 기획조정실 내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시정연구담당관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이관(안 제10조제5항, 제7항)
- 시민건강국 내 어르신, 취약계층대상 건강관리 업무를 정신건강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이관(안 제17조의2제4항, 제6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청원 관련 사무분장을 ‘청원 제도 운영 총괄’로 변경·조정(안 제146조제4항)
- 행정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동남권추진단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직렬 조정(안 제20조제2항, 안 제2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6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대응을 위한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대응을 위한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 행정8급 △1, 위생8급 △1, 사서8급 △1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방호6급 +1, 사서6급 +1, 행정7급 +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43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3211호)를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256,19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41,261	주택재개발
		송인동 56번지 일대	43,093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83,788	
	성동구	마장동 381번지 일대	18,749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27,981	
	종랑구	면목동 69-14번지 일대	58,540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79,756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	12,124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10,619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	192,670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13,004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71,860	
	마포구	공덕동 11-24번지 일대	82,320	
	양천구	신월동 913~976번지	115,699	
	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34,906	
	구로구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37,672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38,859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31,299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50,142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75,600	
	송파구	마천동 93-5번지 일대	106,101	
	강동구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30,154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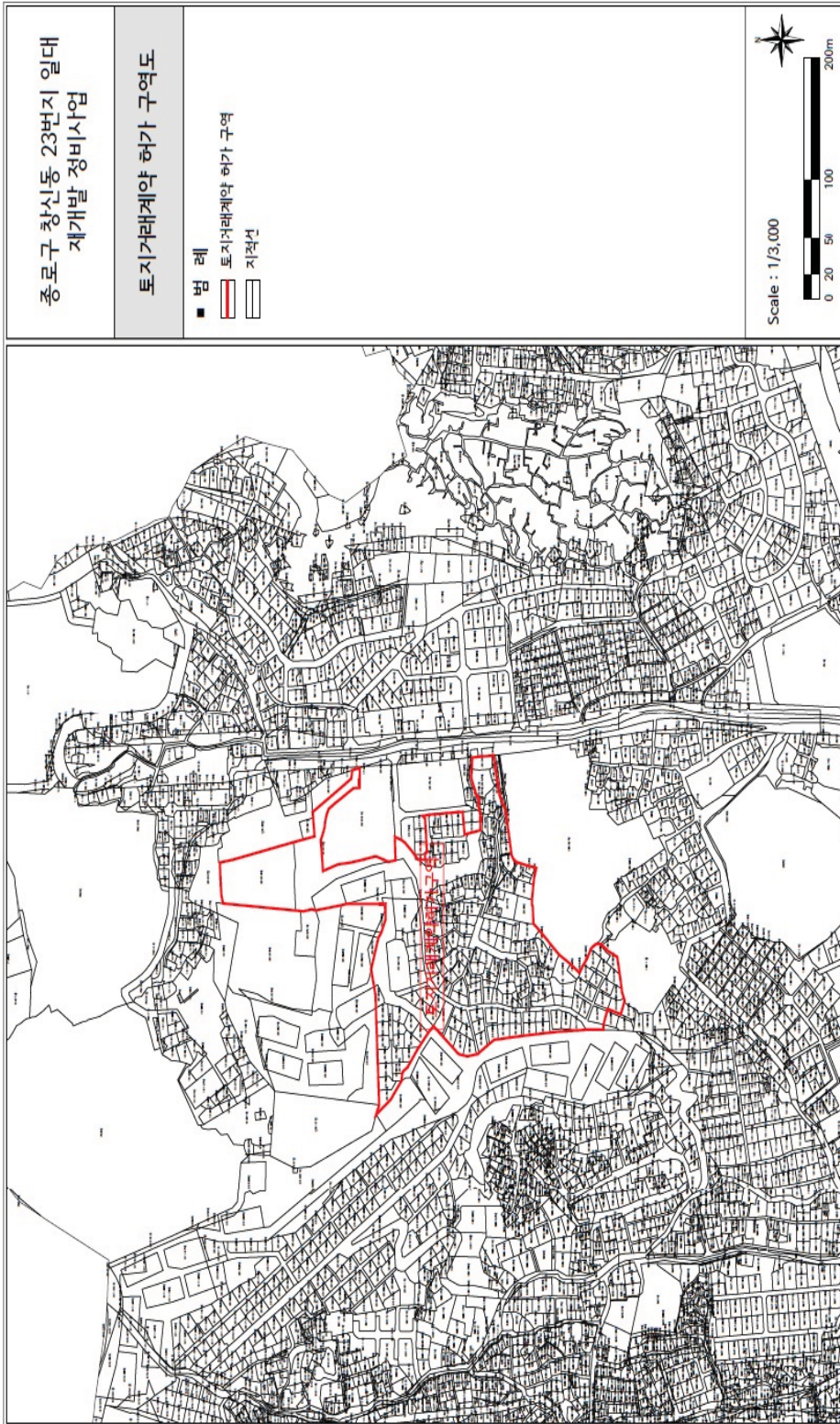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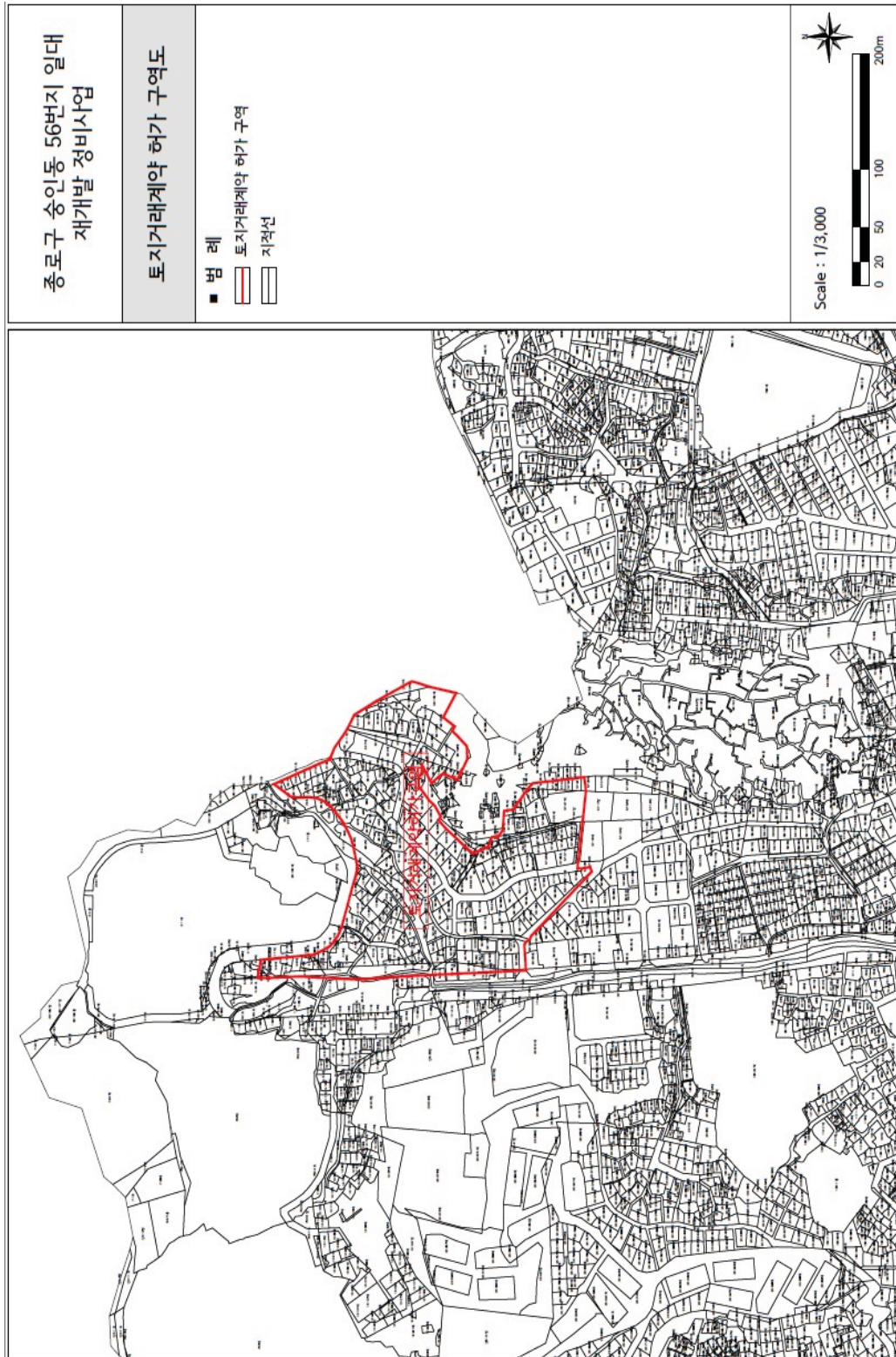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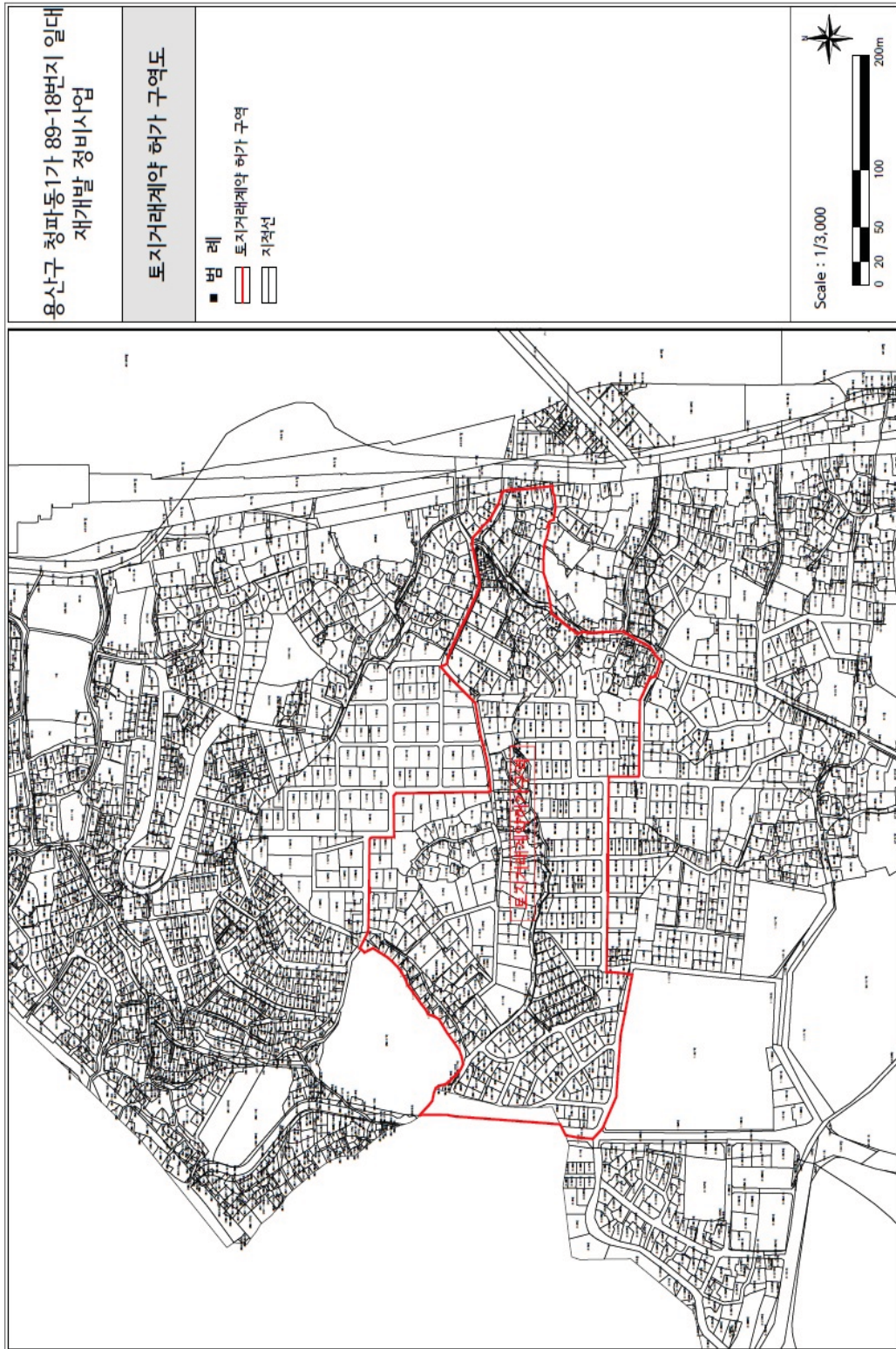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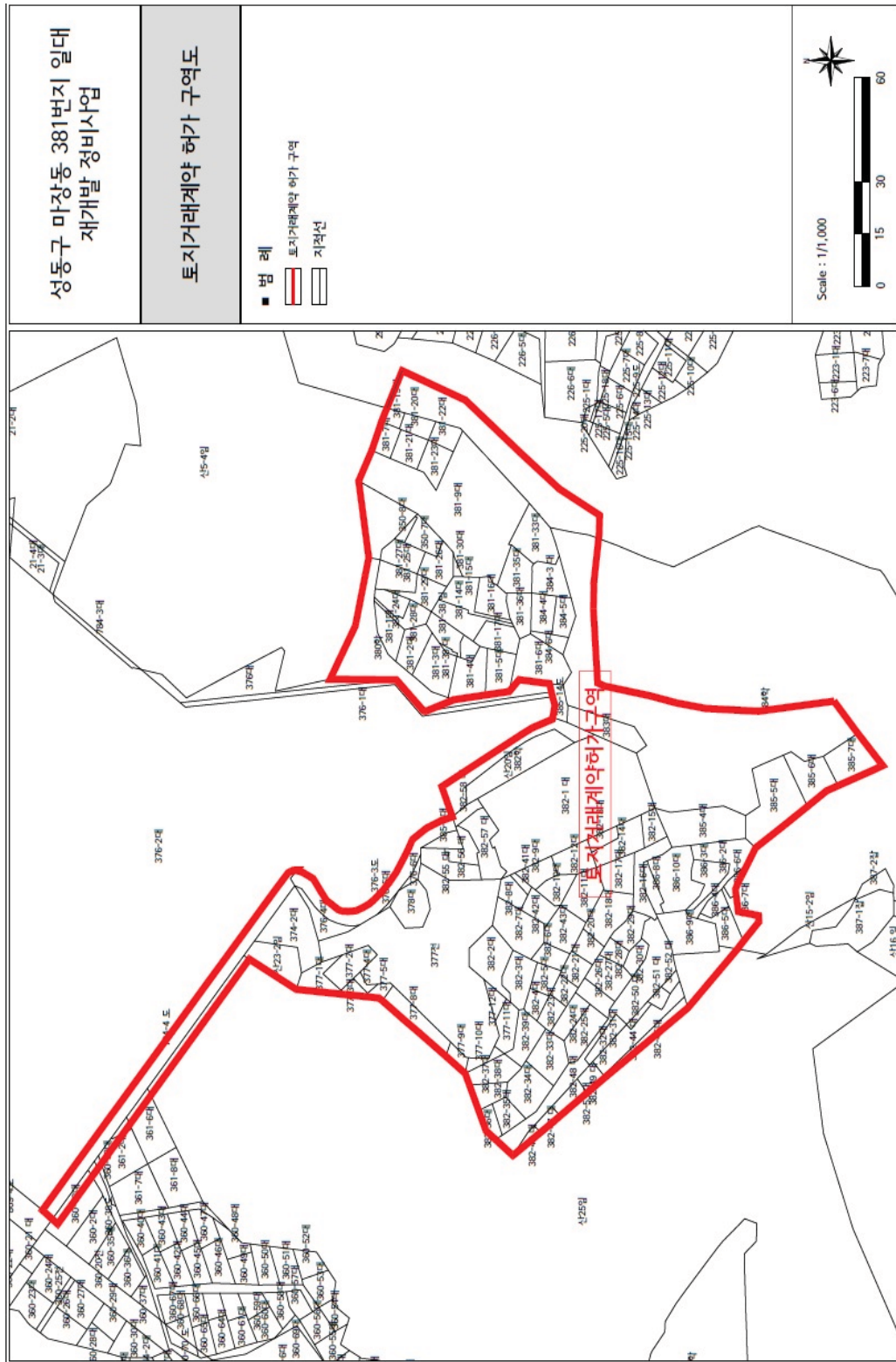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56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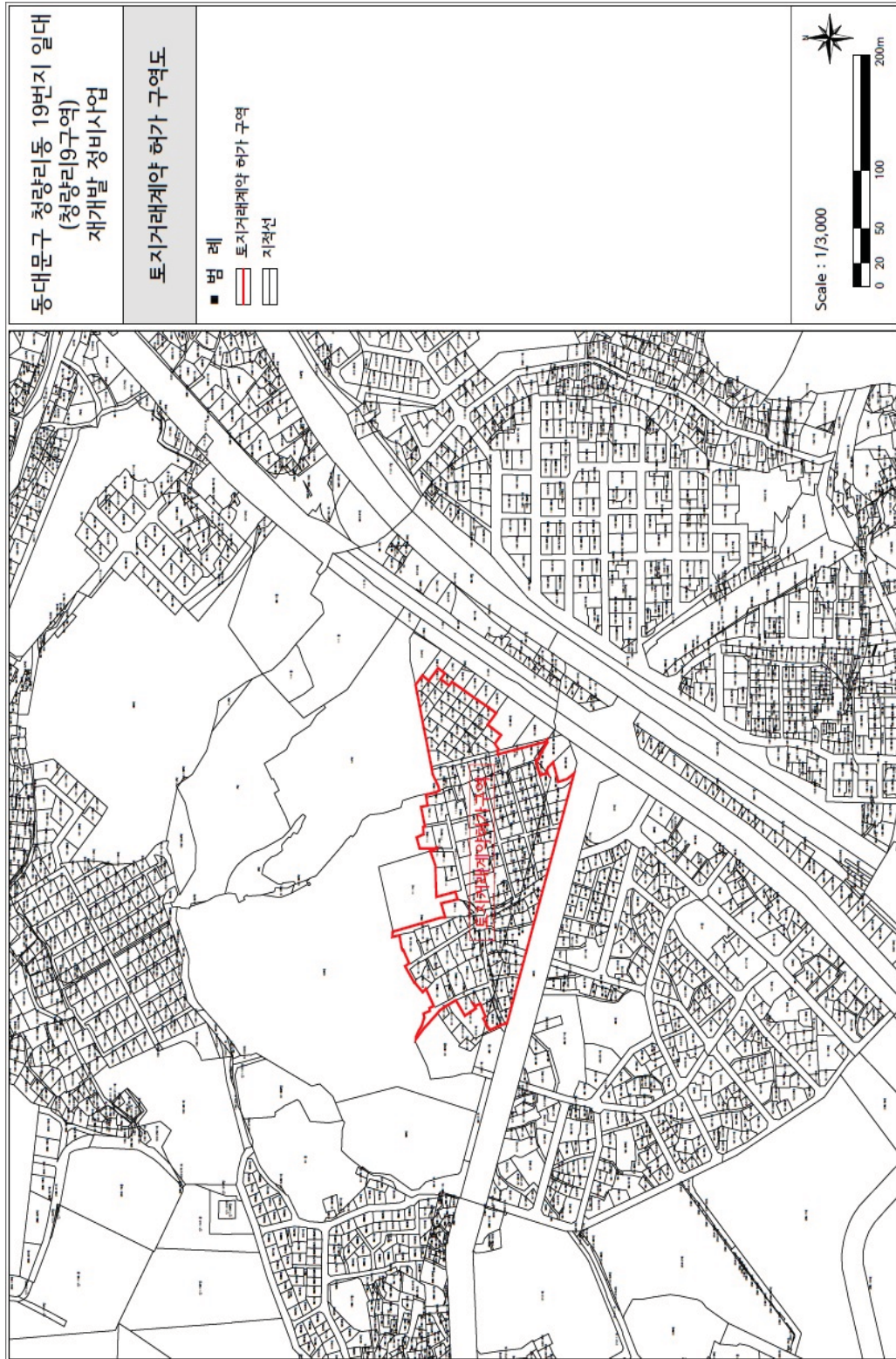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89 - 18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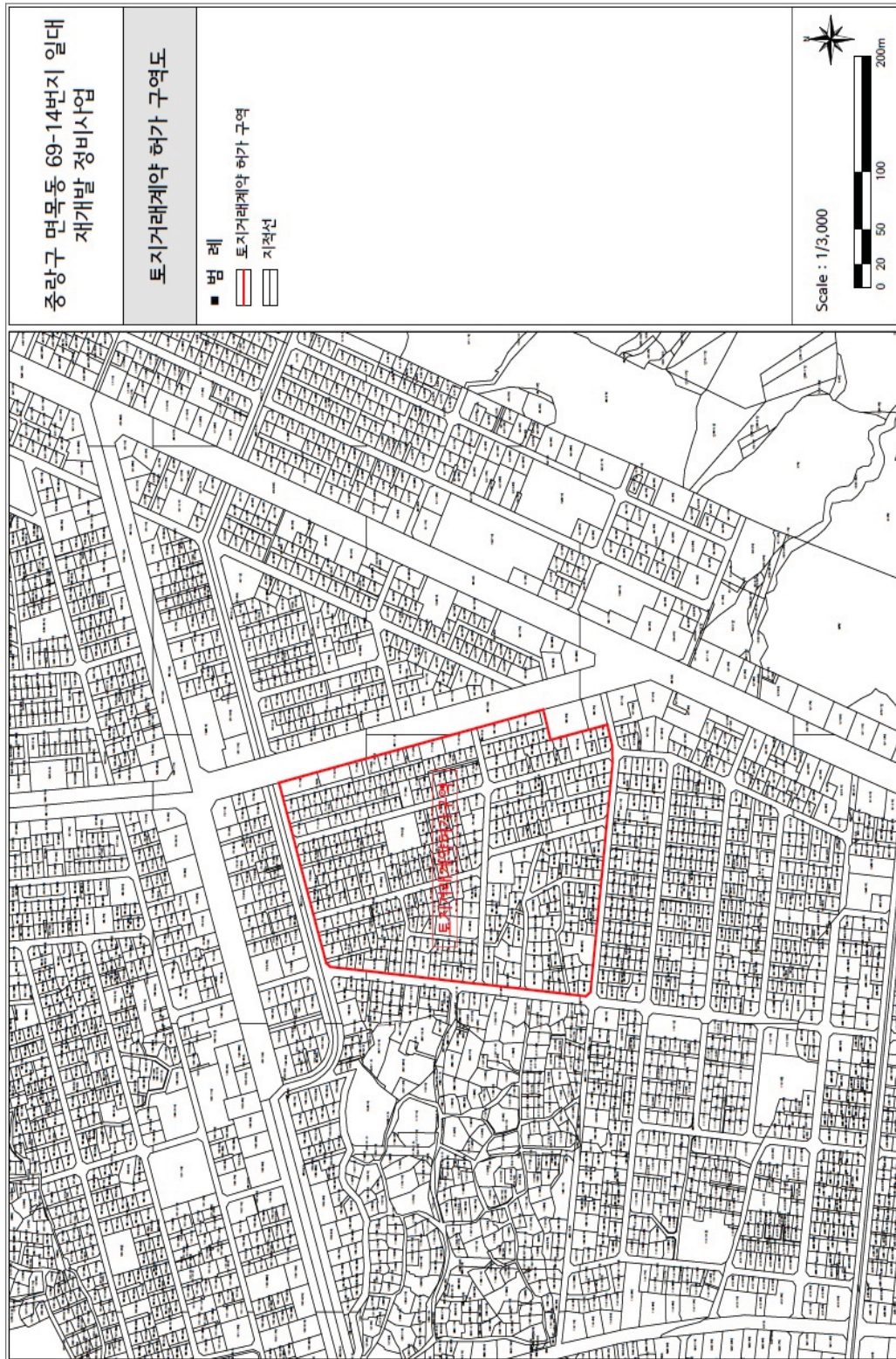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8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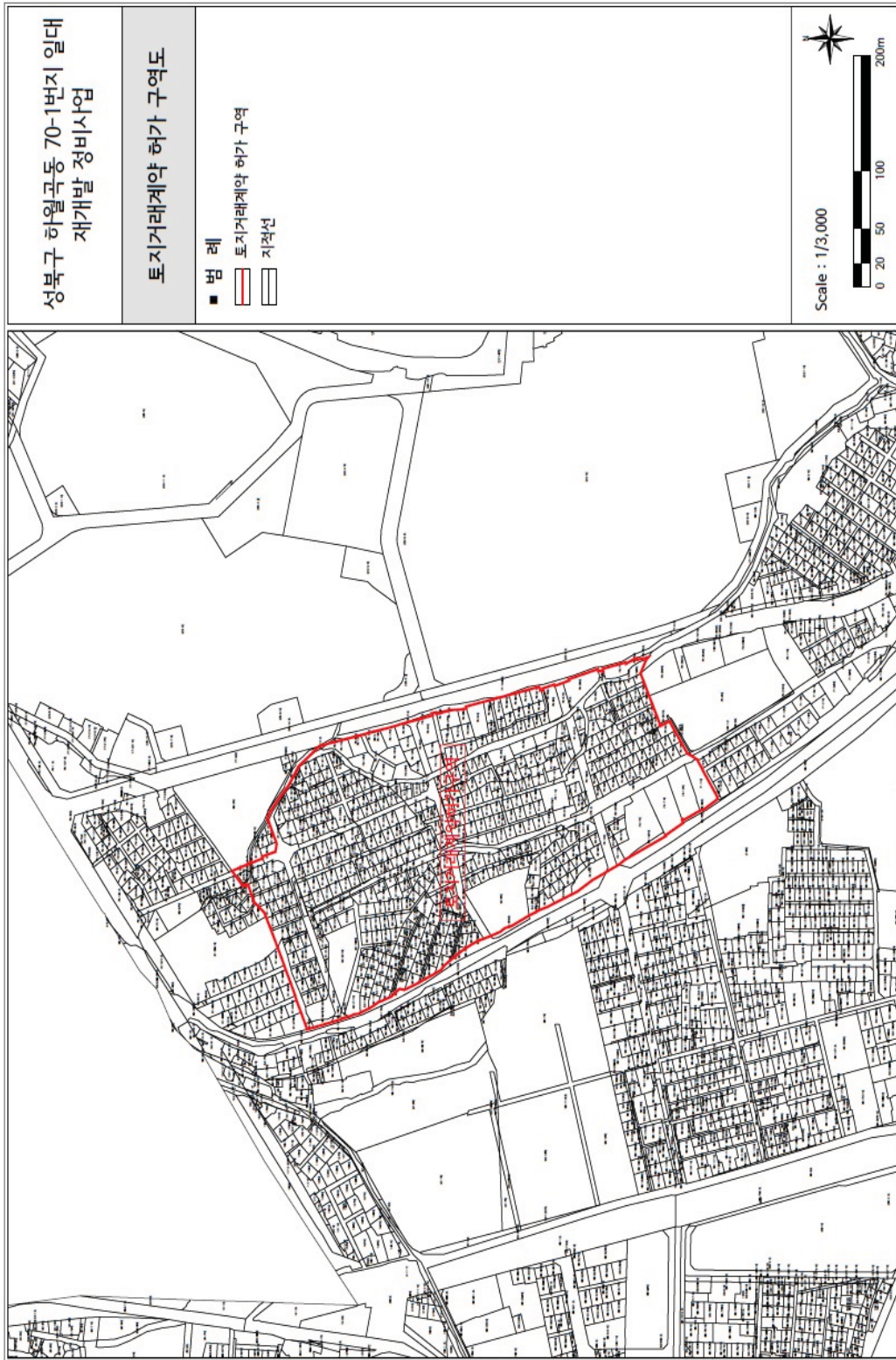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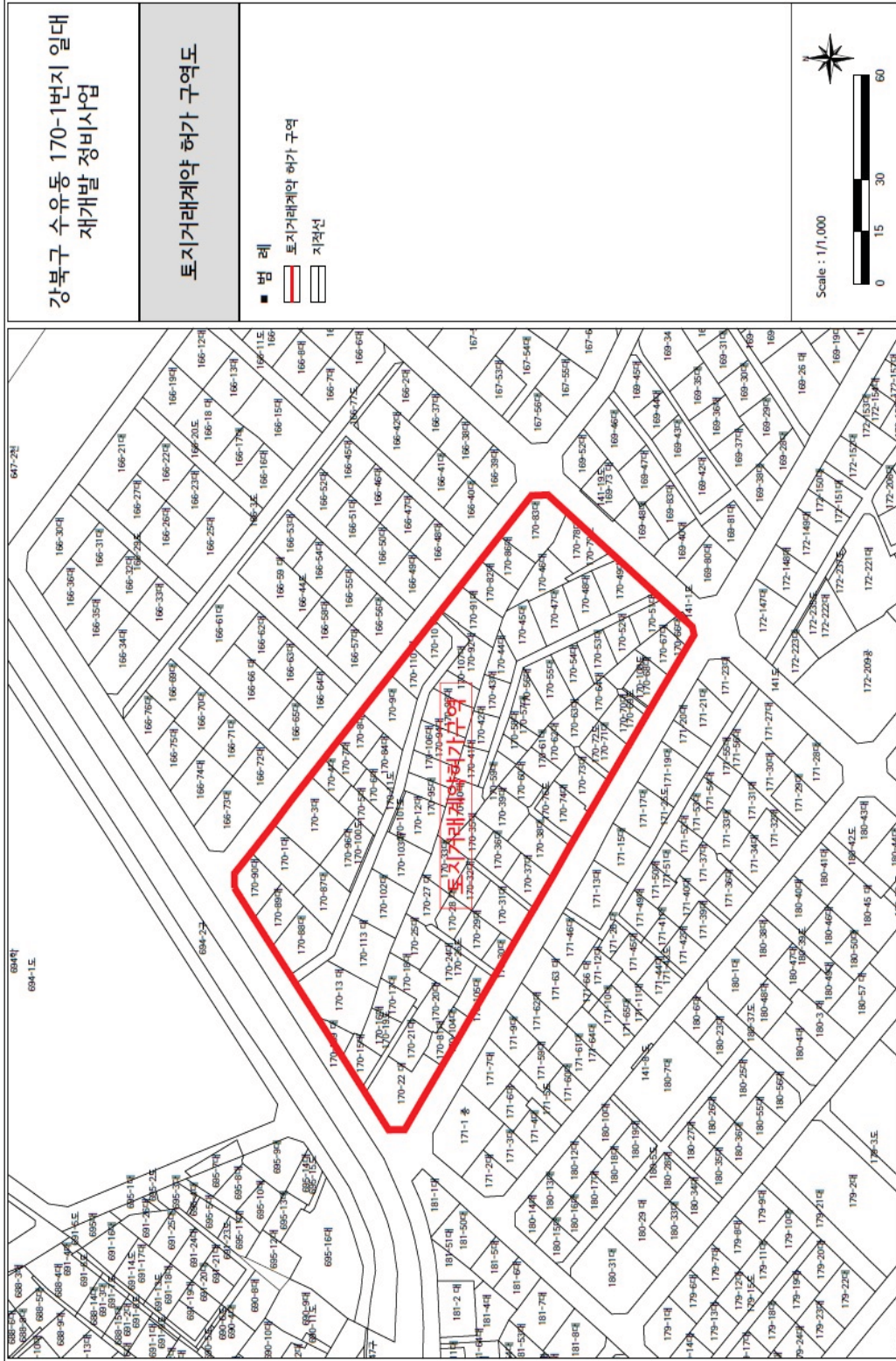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9 - 14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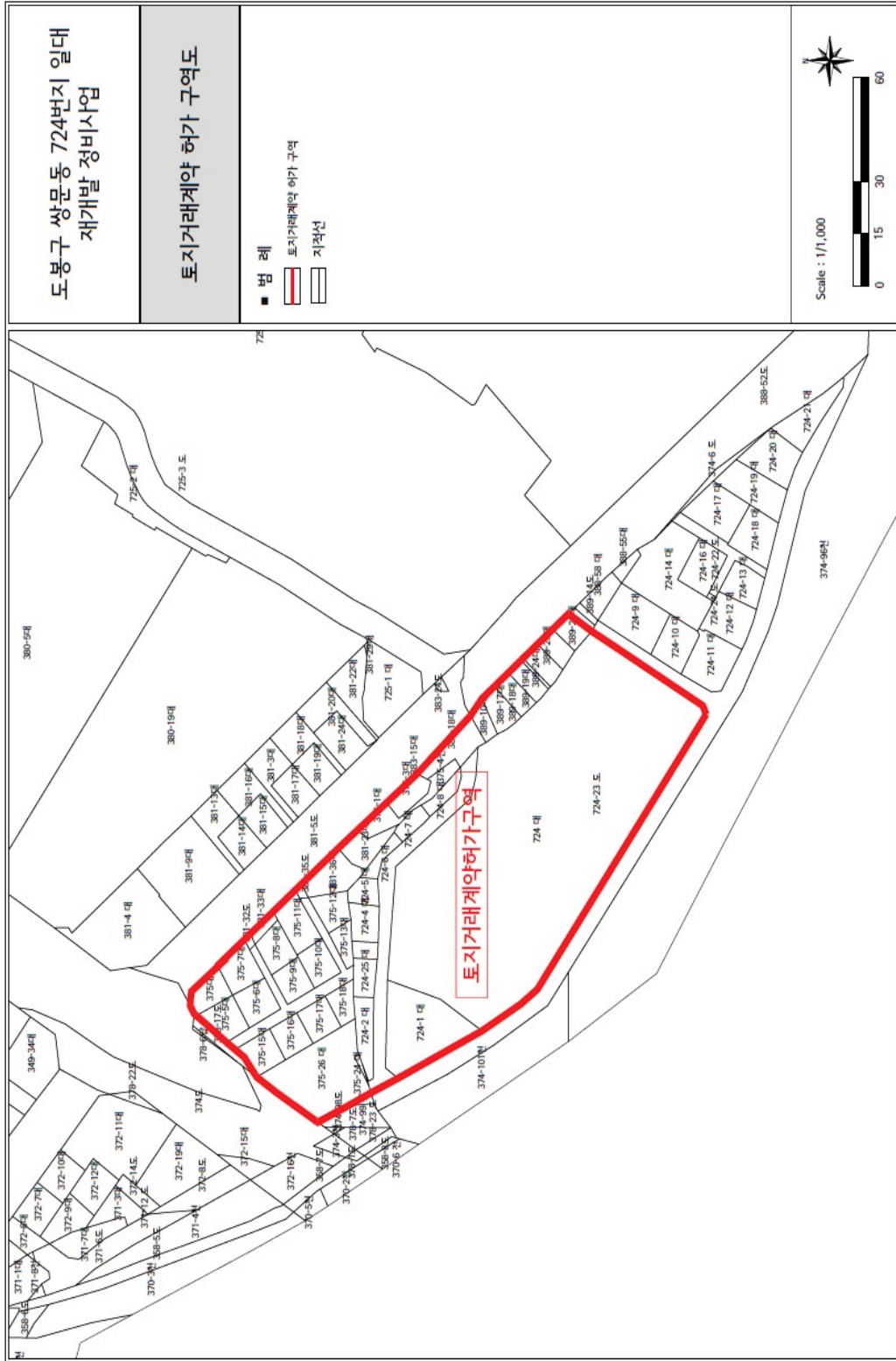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70 - 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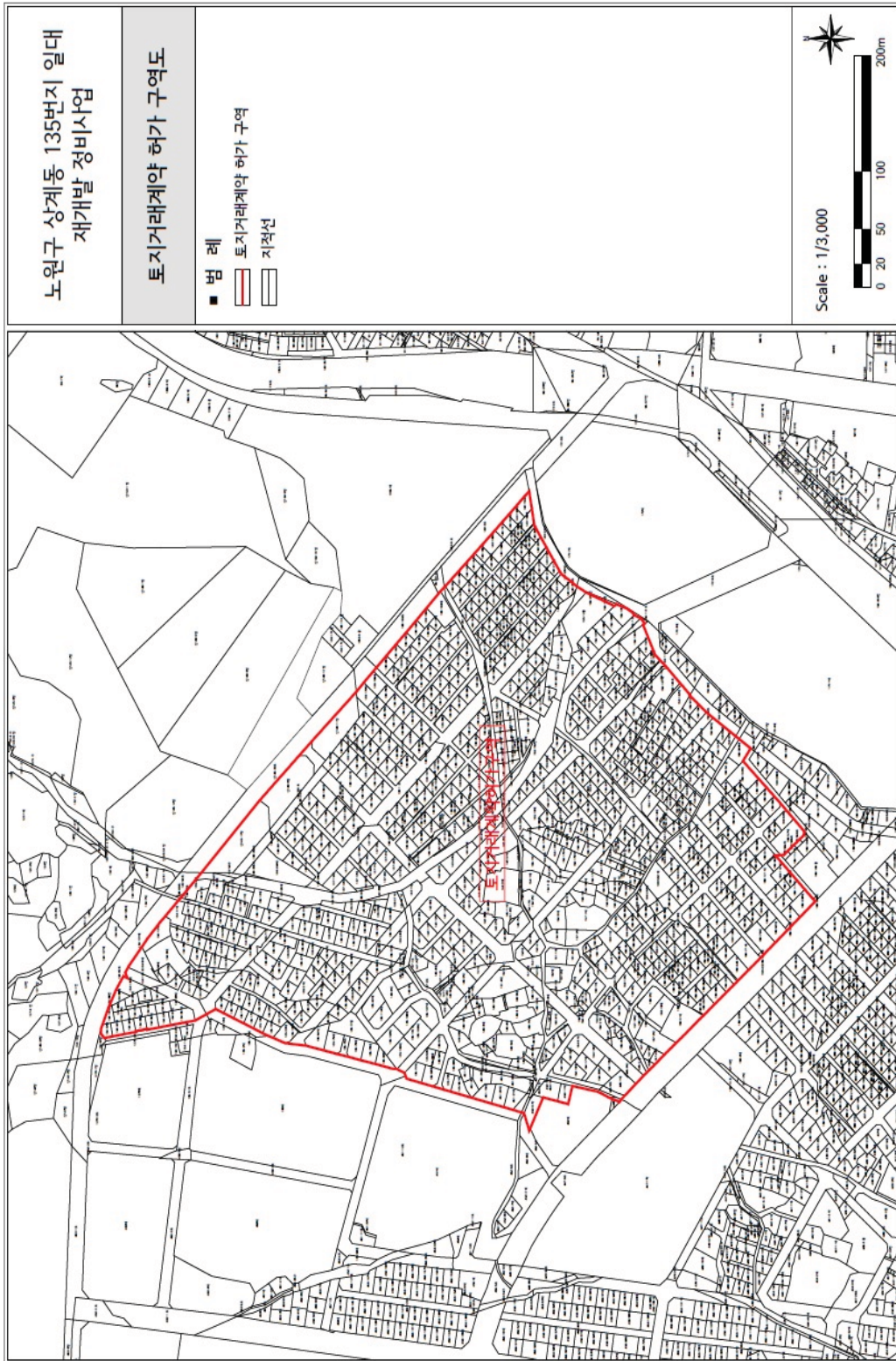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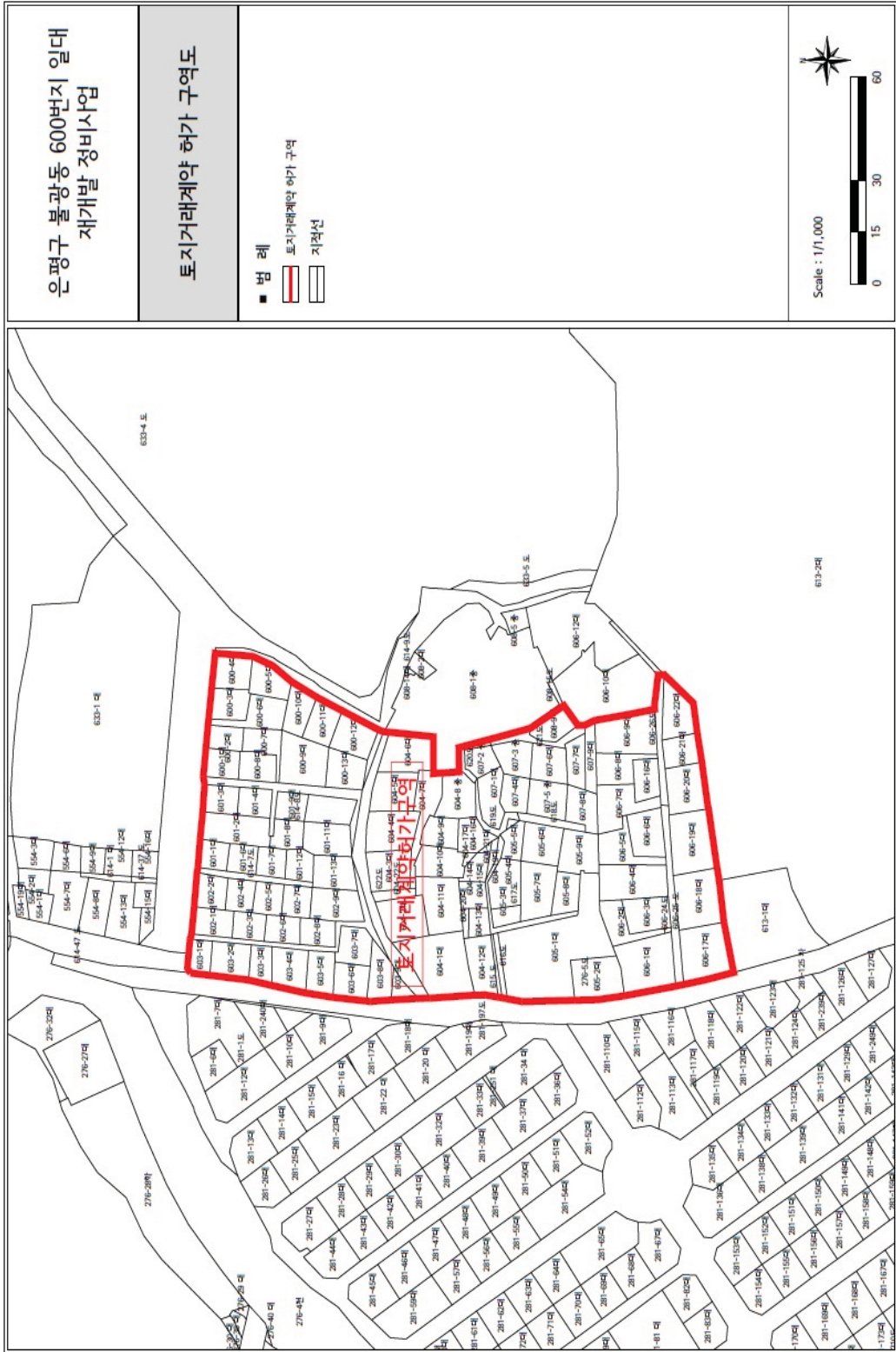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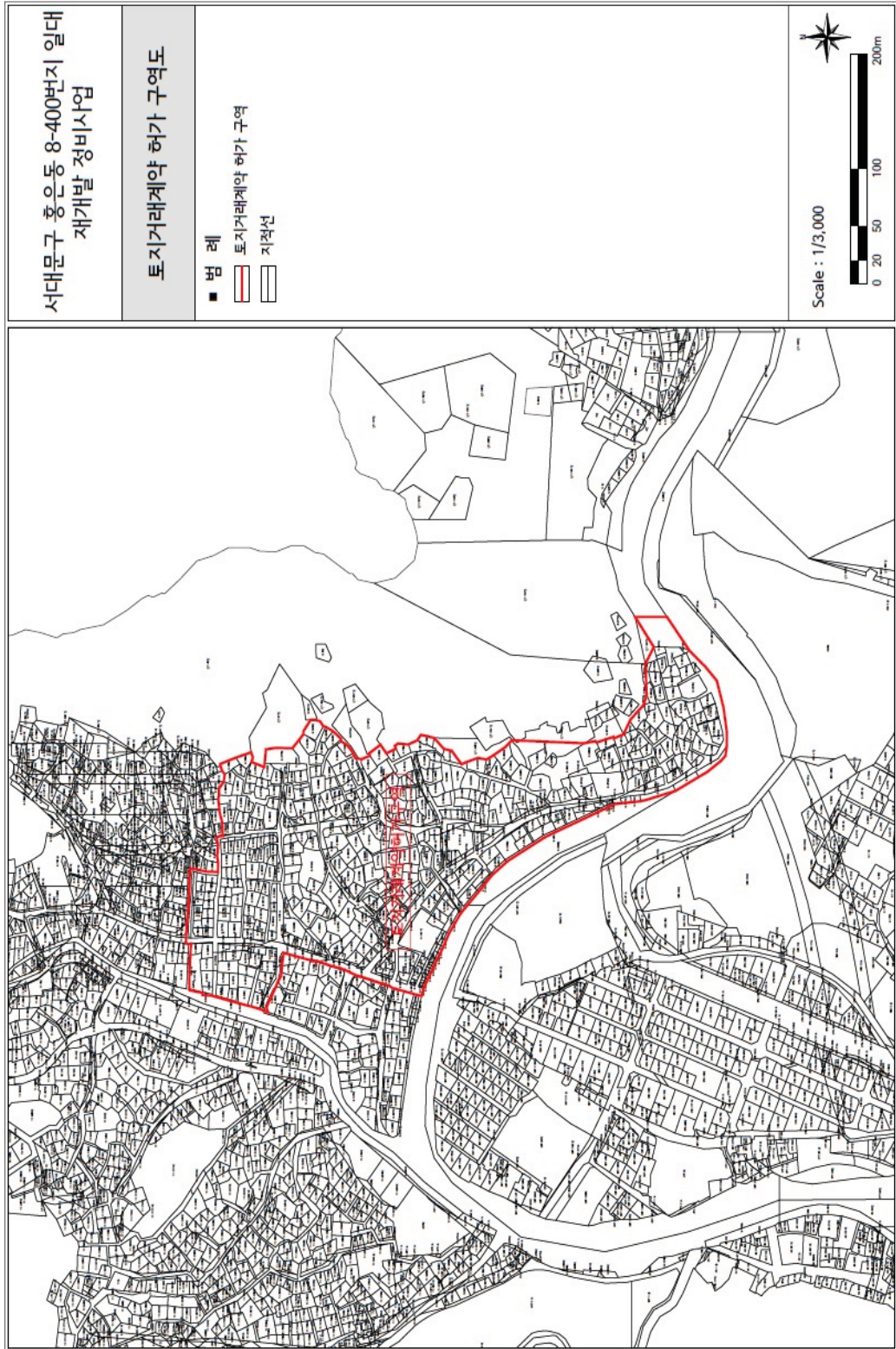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54 - 3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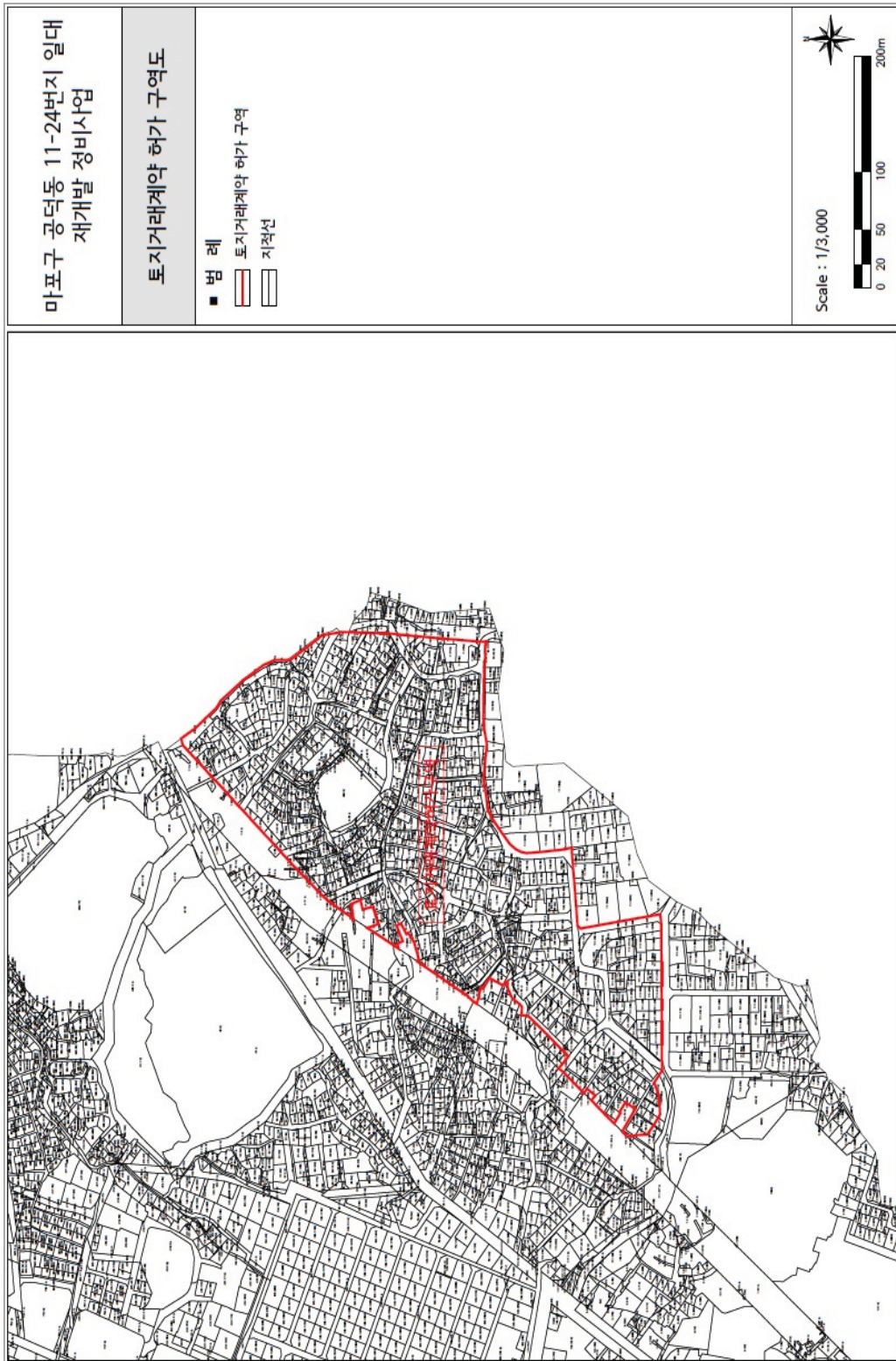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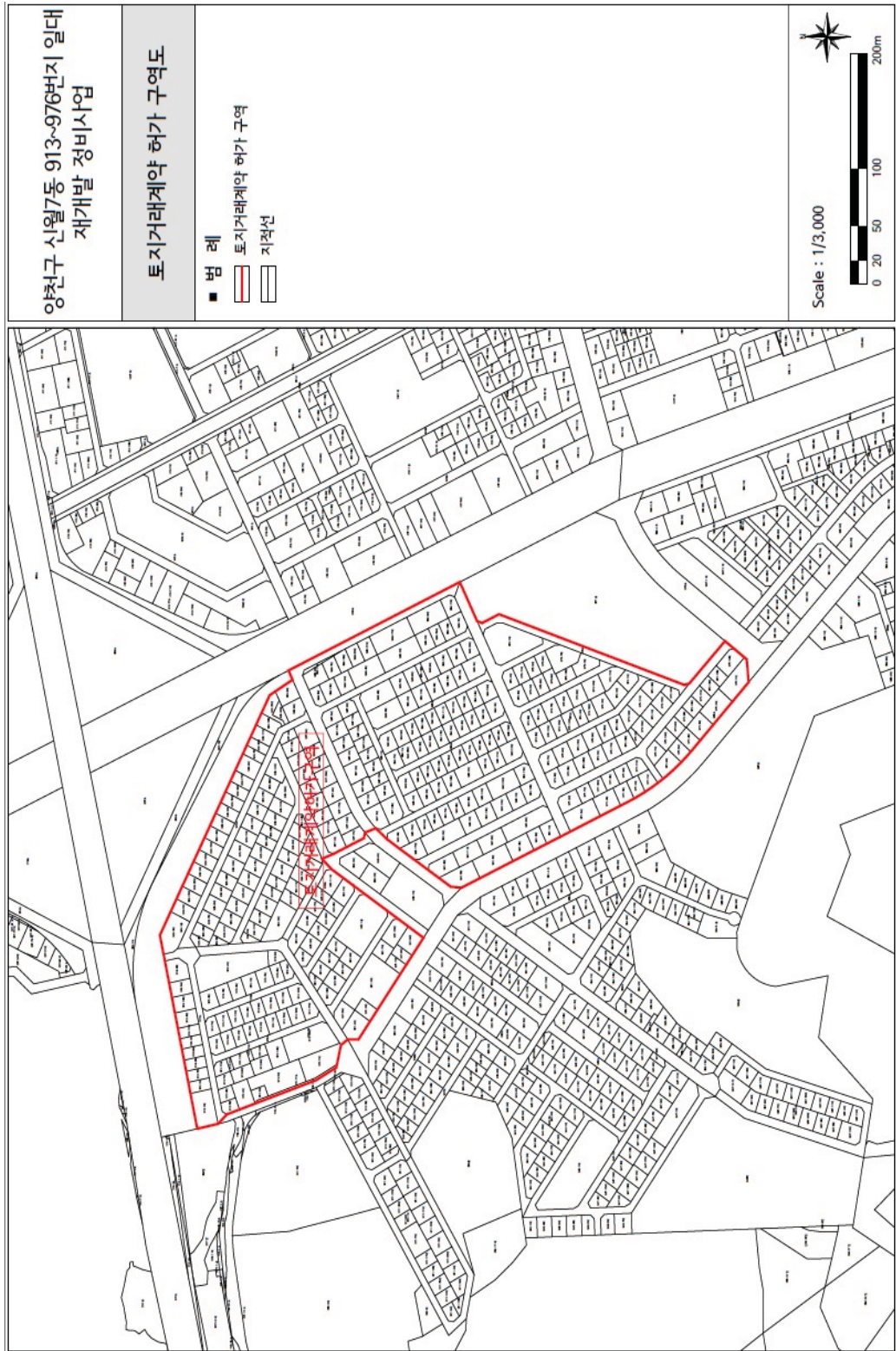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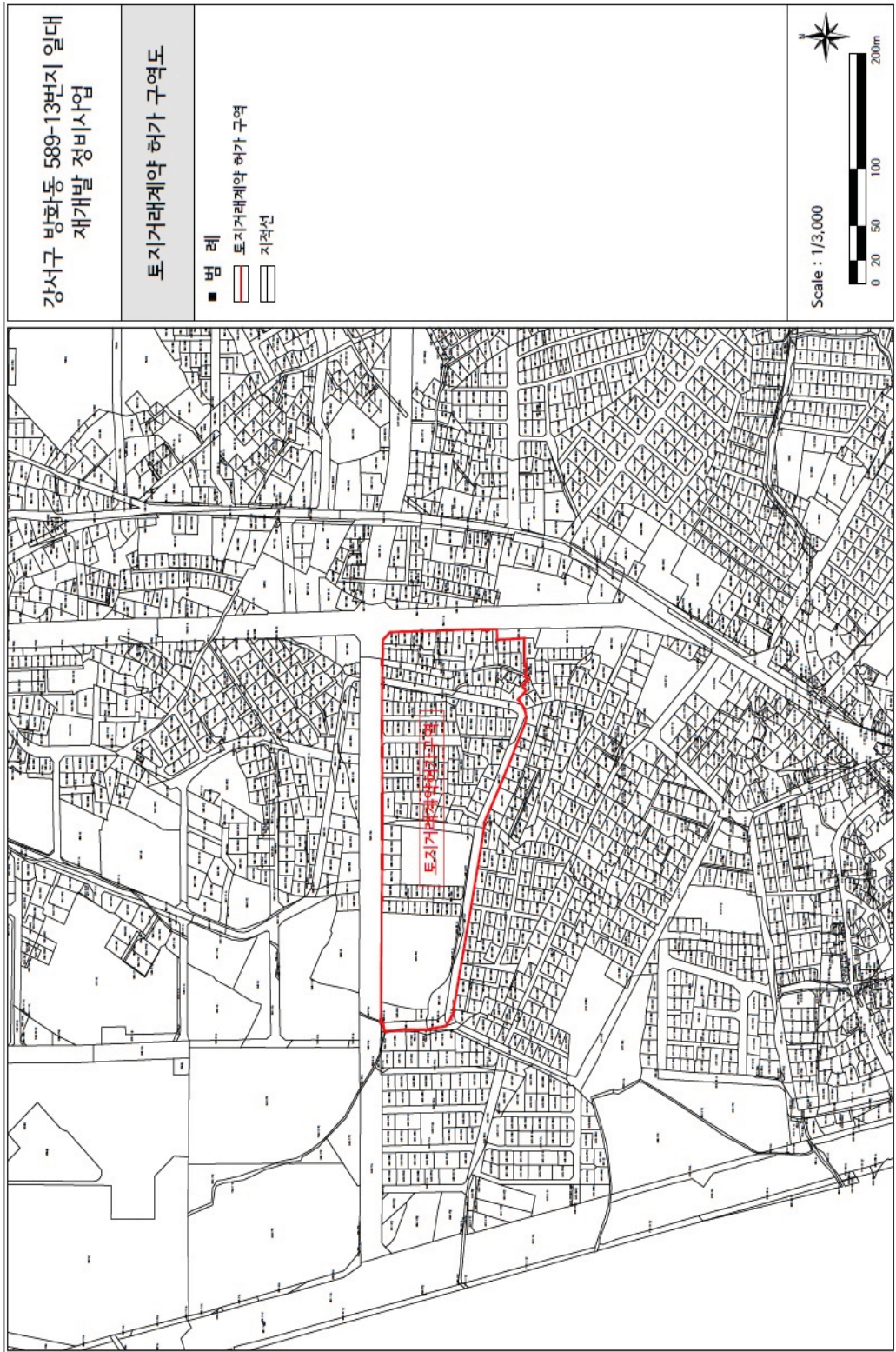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 - 24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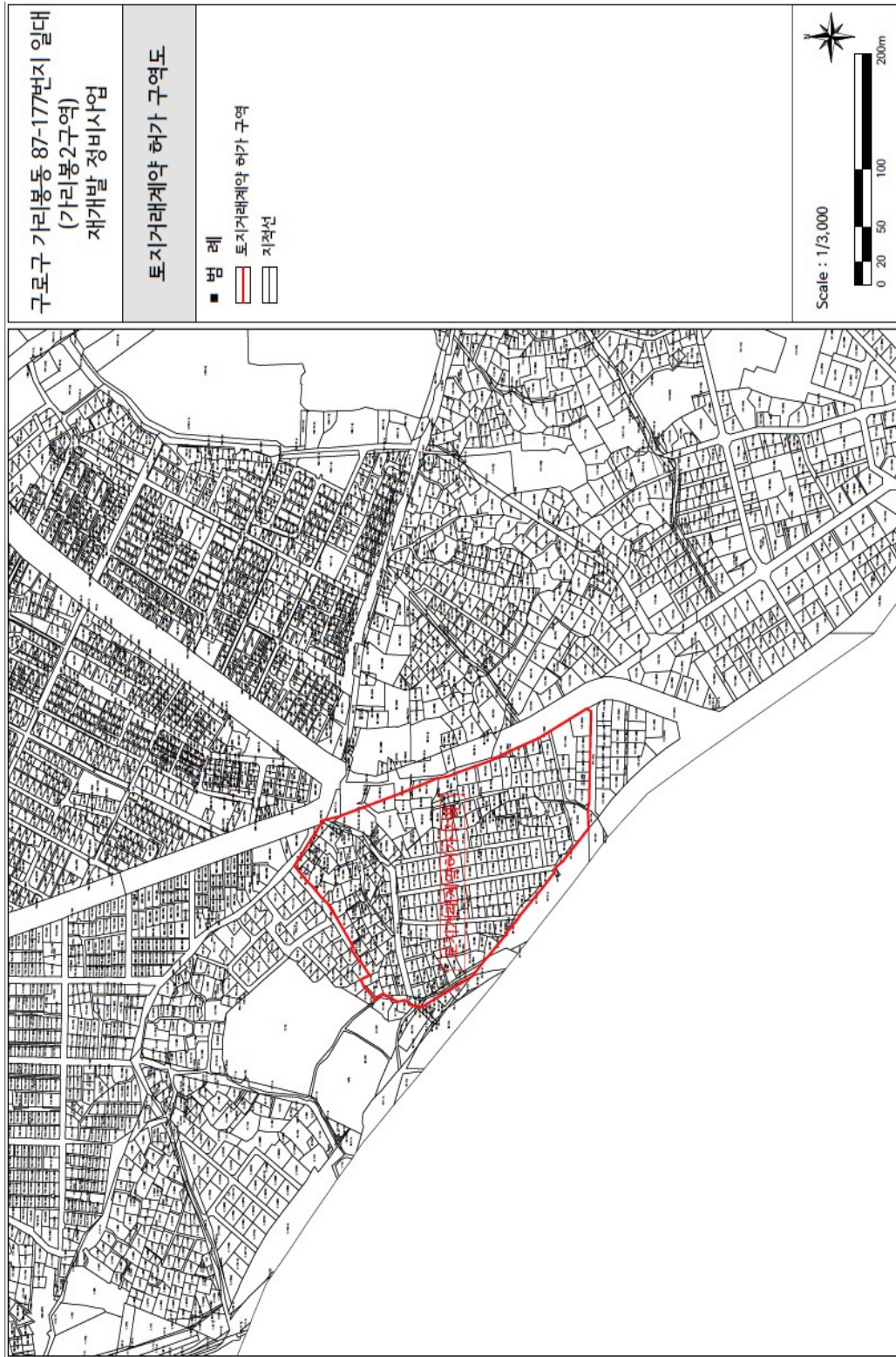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13~976번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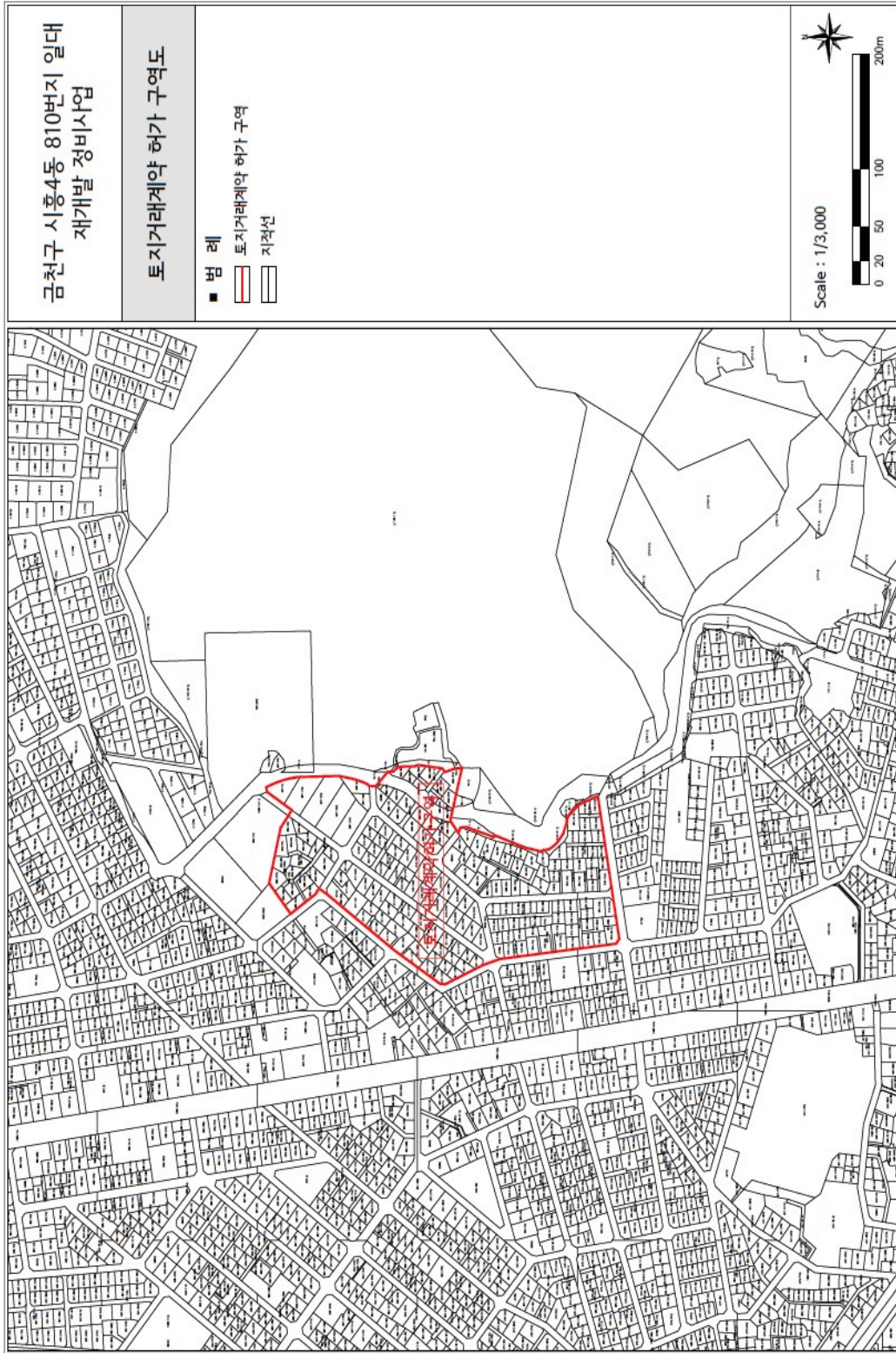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89 - 13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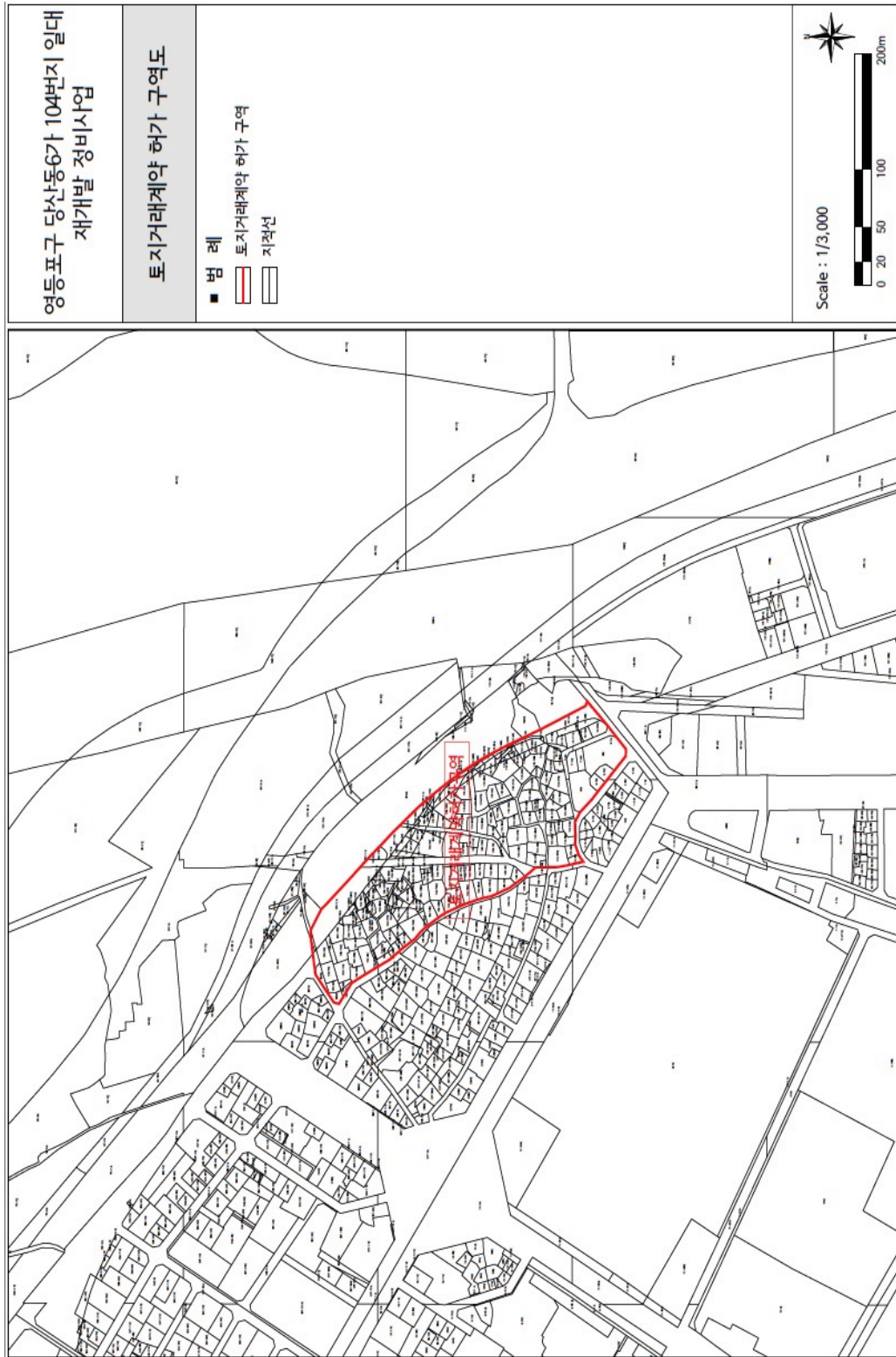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7 - 177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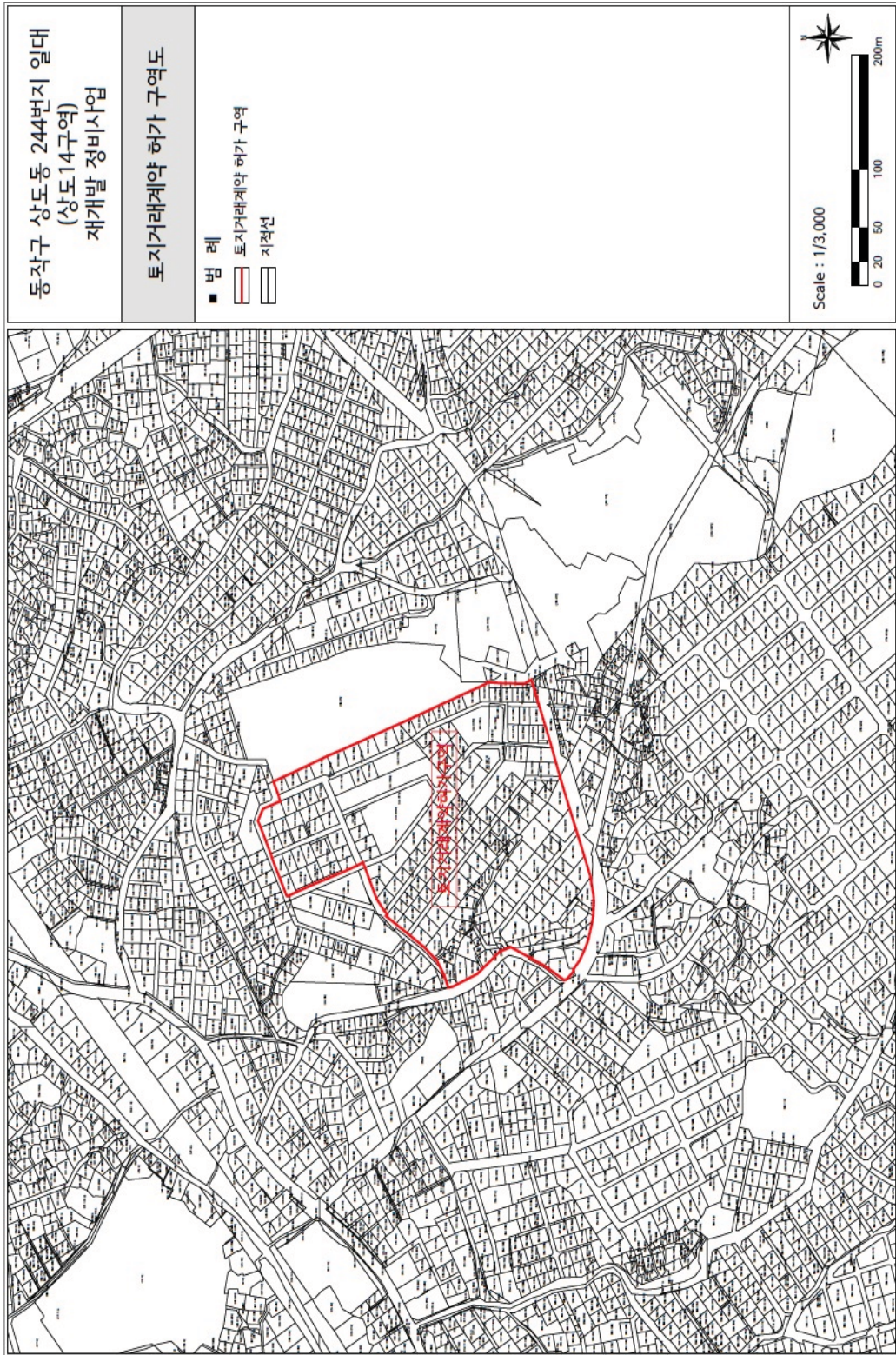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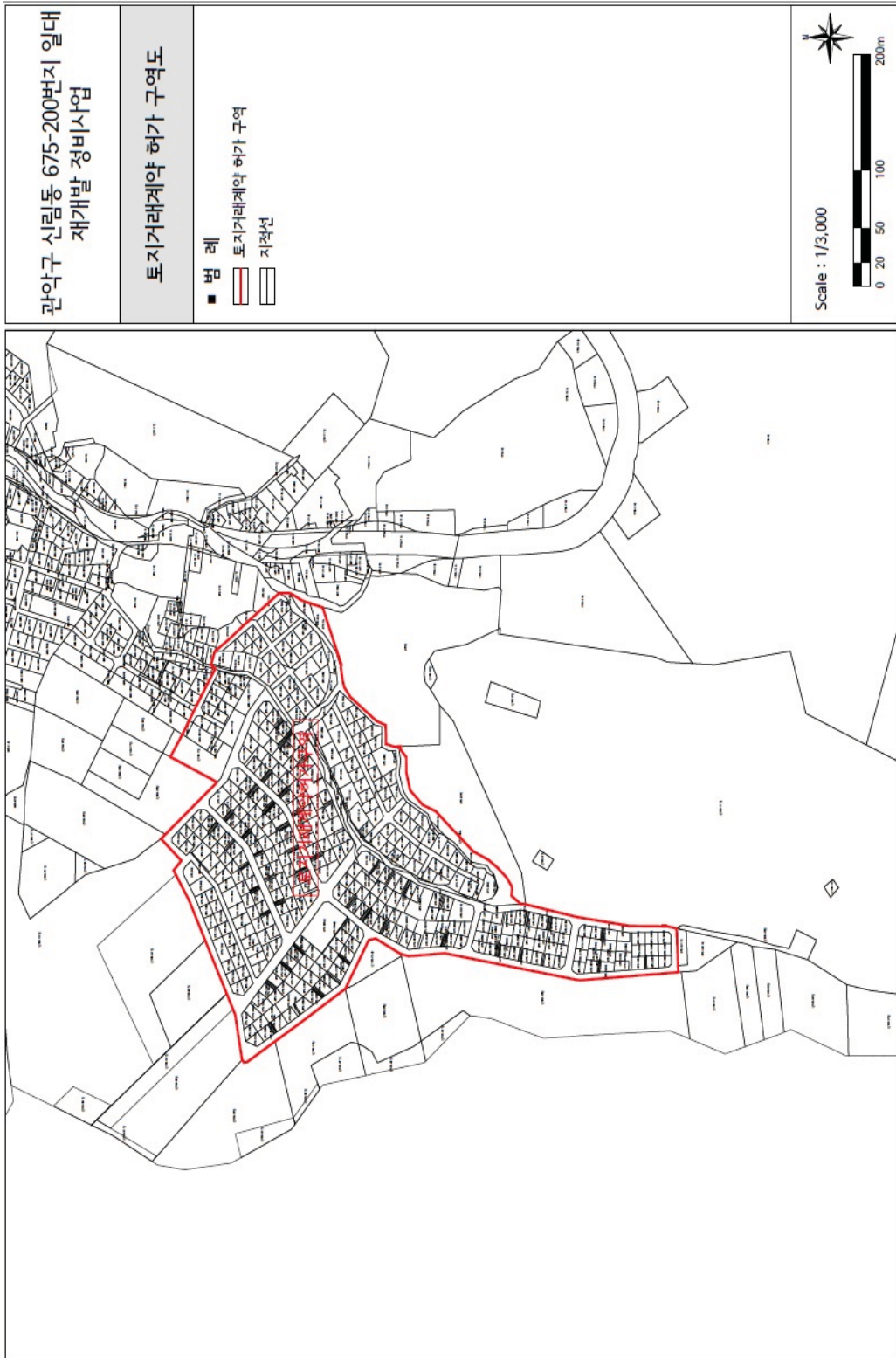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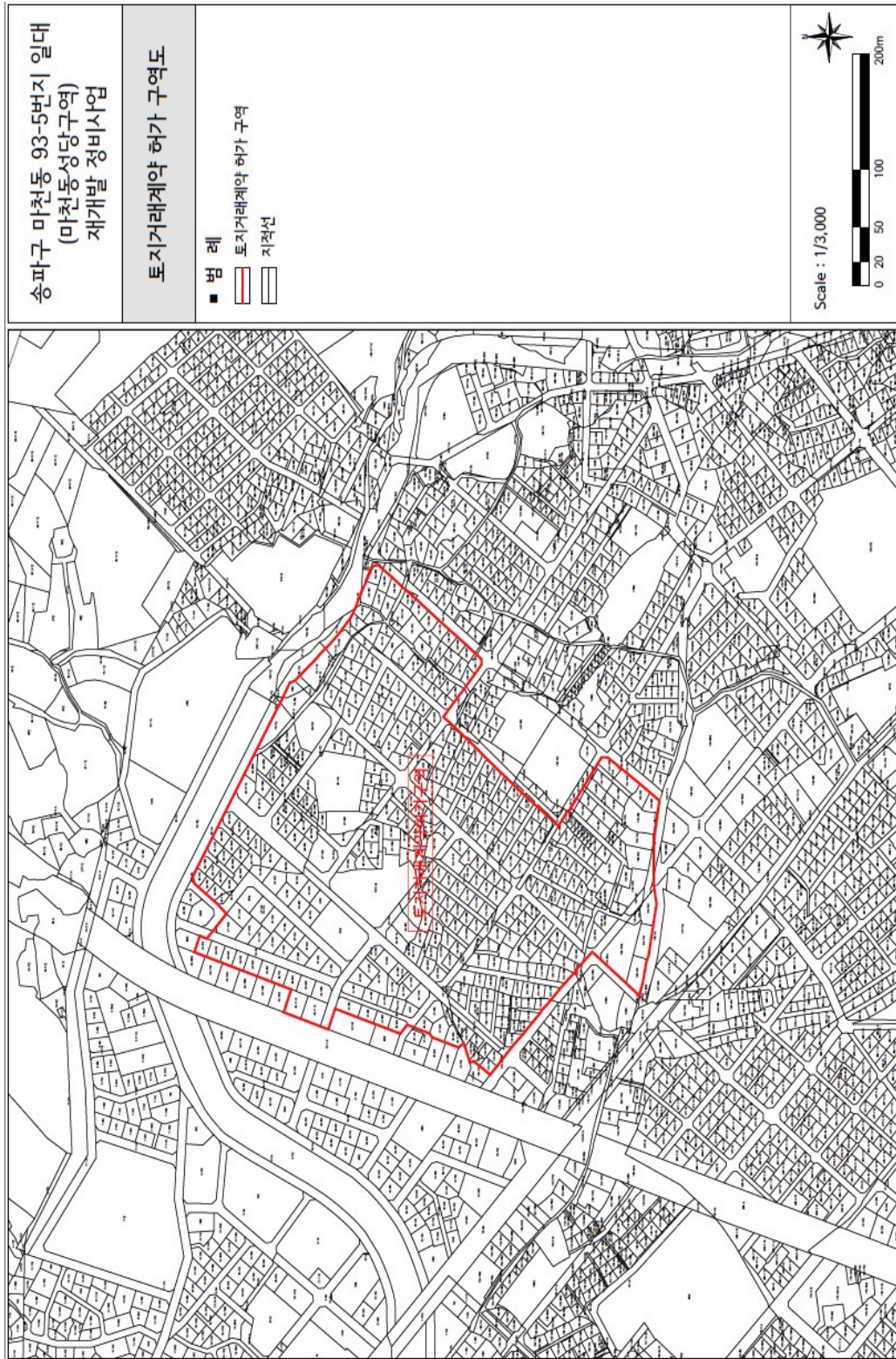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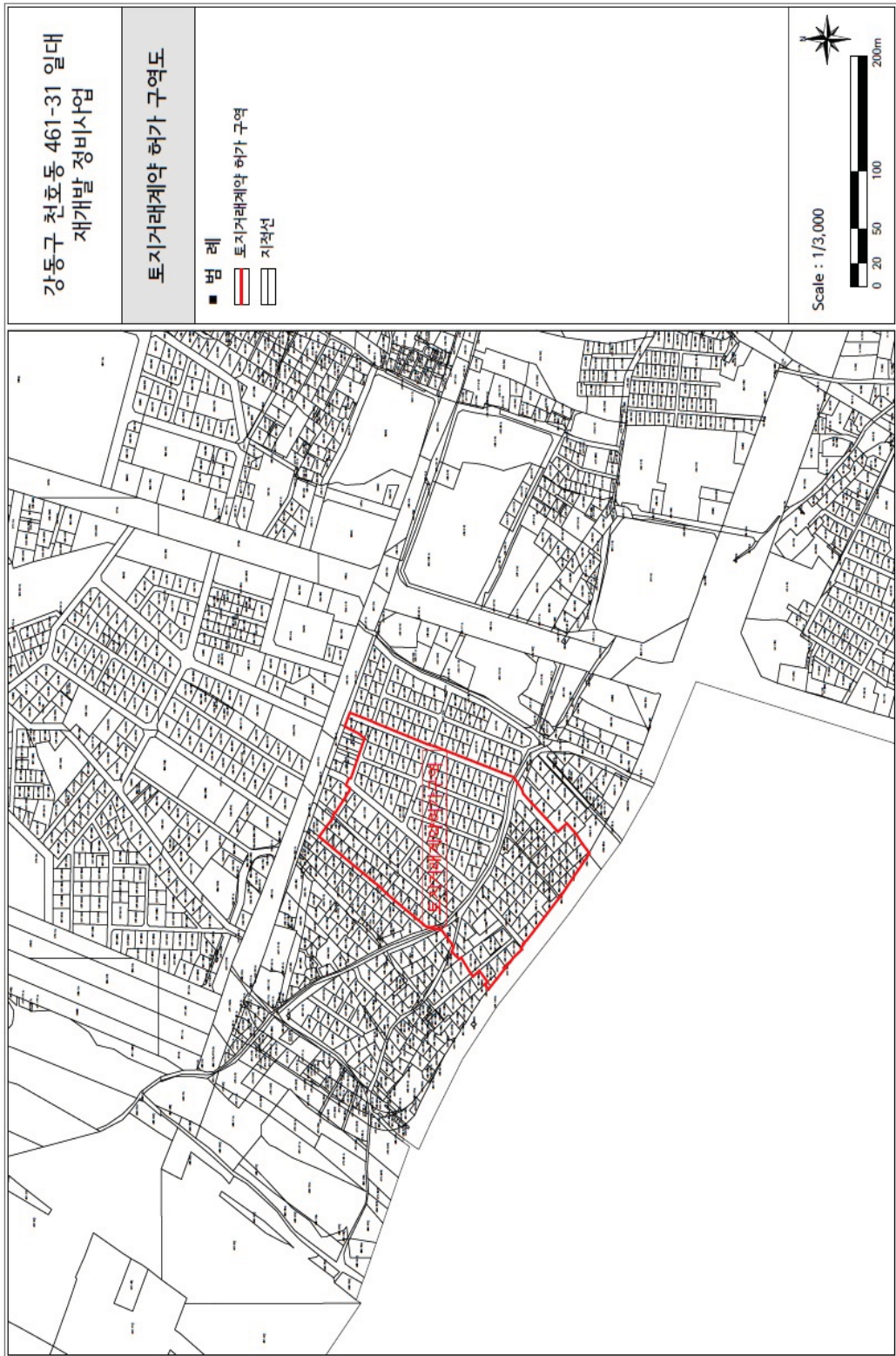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93-5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